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3249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32498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582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관태

변론종결 2022. 4. 27.

판결선고 2022. 5. 2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582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48/9,856지분에 관하여 2019.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12,643,1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43,1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아래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제4면 제6~9행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대지의 매도인이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매도인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삭제하며,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C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경우 E이 위 주택을 신축한 후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매도인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지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거나 매도인 I이 선의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원소유자인 I이 E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E이 매수하면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김지영, 판사 윤남현

별지